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제5호 2021. 1. 29(금)

선 람	기관의 장

조 례

- 남원시 조례 제1638호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1
- 남원시 조례 제1639호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4
- 남원시 조례 제1638호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8

규 칙

- 남원시 규칙 제665호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4

고 시

- 남원시 고시 제2020-13호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9

공 고

- 남원시 공고 제2020-243호 남원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공고 ----- 21

회 람										
--------	--	--	--	--	--	--	--	--	--	--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1년 1월 29일

남원시 조례 제 1638 호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1,102명”을 “1,12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077명”을 “1,101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남원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총정원 : <u>1,102명</u></p> <p>2. 집행기관의 정원 : <u>1,077명</u></p> <p>3. (생략)</p>	<p>제2조(정원의 총수) -----</p> <p>-----</p> <p>-----</p> <p>-----.</p> <p>1. ----- <u>1,126명</u></p> <p>2. ----- <u>1,101명</u></p> <p>3. (현행과 같음)</p>

[별표 3]

남원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단위: 명)

구 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126	-				
정무직 계	1					
시 장	1	1				
일반직 계	1,076	-				
4급	6	4	1	1		
5급	56	25	2	3	3	23
6급 이하 계	1,014	-				
별정직 계	1	-				
6급이하 계	1	-				
연구직 계	4	-				
연구사	4	-				
지도직 계	44	-				
지도관	3			3		
지도사	41	-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1년 1월 29일

남원시 조례 제 1639 호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자치법규 심사·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에 관한 사항

7.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기획실”을 “감사실”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 · 보좌기관의 설치) ① (생 략)</p> <p>② 기획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 장한다.</p> <p>1. ~ 5. (생 략)</p> <p>6. <u>자치법규 심사·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에 관한 사항</u></p> <p>7. ~ 10. (생 략)</p> <p>③ 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 장한다.</p> <p>1. ~ 5. (생 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④ (생 략)</p>	<p>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 · 보좌기관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5.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7. ~ 10. (현행과 같음)</p> <p>③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자치법규 심사·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에 관한 사항</u></p> <p>7. <u>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 리 및 세무상담</u></p> <p>④ (현행과 같음)</p>

[별표 1]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7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남원시보건소	남원시 요천로 1285	남원시 일원
운봉읍보건지소	남원시 운봉읍 황산로 1083	운봉읍 일원
주천면보건지소	남원시 주천면 정령치로 55	주천면 일원
수지면보건지소	남원시 수지면 고주로 635-10	수지면 일원
송동면보건지소	남원시 송동면 송기길 58-1	송동면 일원
금지주생통합 보건지소	남원시 금지면 요천로 550	주생면, 금지면 일원
대강면보건지소	남원시 대강면 섬진로 863	대강면 일원
대산면보건지소	남원시 대산면 운교1길 20	대산면 일원
사매면보건지소	남원시 사매면 오신1길 8	사매면 일원
덕과면보건지소	남원시 덕과면 덕오로 296	덕과면 일원
보절면보건지소	남원시 보절면 신흥2길 23	보절면 일원
산동면보건지소	남원시 산동면 요천로 2922	산동면 일원
이백면보건지소	남원시 이백면 과리길 14	이백면 일원
인월면보건지소	남원시 인월면 인월장터로 53	인월면 일원
아영면보건지소	남원시 아영면 아백로 384	아영면 일원
산내면보건지소	남원시 산내면 대정길 21	산내면 일원
장교보건진료소	남원시 운봉읍 고남로 103	준향, 장교, 장동, 연동, 권포, 가동
매요보건진료소	남원시 운봉읍 매요길 51	임, 신기, 매요, 가산, 방현
공안보건진료소	남원시 운봉읍 공안길 59	덕산, 수철, 공안, 유평, 용은, 행정, 산덕
덕치보건진료소	남원시 주천면 구룡폭포길 387-11	주촌, 가장, 내기, 고촌, 회덕, 노치
하주보건진료소	남원시 주천면 고주로 1276	상주, 하주, 배촌, 덕촌, 하송
남창보건진료소	남원시 수지면 남창길 25	남창, 용강, 신평, 초리, 서당, 등동, 가정, 마연
연산보건진료소	남원시 송동면 송동연산길 1	장포, 영촌, 손동, 연산, 양평, 두곡, 신촌
장국보건진료소	남원시 송동면 부석안길 36	문치, 오촌, 생촌, 원촌, 부석, 태동, 동서내, 안계
도산보건진료소	남원시 주생면 상도길 20	낙동, 내동, 광촌, 상도, 도산
신월보건진료소	남원시 금지면 택내길 13	택촌, 내기, 상신, 장승, 금평, 황구, 용진, 하도
수흥보건진료소	남원시 대강면 수촌2길 6	산촌, 곡촌, 양촌, 수촌, 도곡, 옥전, 택촌, 평촌, 입암
생암보건진료소	남원시 대강면 광암길 10	양동, 금탄, 광암, 생사, 신기, 가덕, 방산
대곡보건진료소	남원시 대산면 상대실1길 4	노산, 하대, 상대, 감동, 독산, 신촌, 월계
서도보건진료소	남원시 사매면 서도길 38	노봉, 수촌, 서촌, 수동, 계동, 인화, 손율, 수월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대율보건진료소	남원시 사매면 대율2길 6	화정, 대율, 덕평, 풍촌, 세동
신양보건진료소	남원시 덕과면 비촌길 105	만동, 도촌, 비촌, 양선, 작소, 사곡, 울천, 월평
용산보건진료소	남원시 덕과면 덕과로 583	고정, 신정, 덕동, 수촌, 용산, 추산, 배산
사촌보건진료소	남원시 보절면 사계로 402	별촌, 외항, 도촌, 용평, 안평, 사촌, 성남, 성북, 계월
진기보건진료소	남원시 보절면 진기금다길 83	개신, 양촌, 음촌, 진목, 내동, 신기, 금계, 다산
부절보건진료소	남원시 산동면 요천상로 361	부동, 부서, 중절
대상보건진료소	남원시 산동면 대기대상길 230	대촌, 월산, 대상, 상신
남계보건진료소	남원시 이백면 닭피길 8	내동, 외동, 계산, 남평, 산남, 내기, 강촌
건지보건진료소	남원시 인월면 유곡로 394-5	취암, 동무, 덕실, 외진, 내진, 지산, 유곡, 도장, 성내, 자래, 연실
봉대보건진료소	남원시 아영면 승전로 855	아곡, 당동, 봉대, 외인, 내인, 매산, 서갈, 동갈
반선보건진료소	남원시 산내면 지리산로 795	원천, 내령, 부운, 와운, 반선, 덕동, 달궁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1년 1월 29일

남원시 조례 제 1640 호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상시고용인원”이란 정부가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하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인원을 말한다.

제12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으로 하고, “이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보조금의 지원·정산·사후관리·환수 등에 관하여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우선 적용한다”로 한다.

제29조제2항제2호 중 “관유리 제조(2311)”을 삭제한다.

제2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지원기업으로부터 보조금 환수에 필요한 담

보를 확보해야 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34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제4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사업시행 후 5년 이내”를 “사업이행기간 내에”로 한다.

- ① 투자기업은 보조금 교부결정일로부터 5년간(이하 “사업이행기간”이라 한다) 해당사업장에서 투자한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투자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7. (생략)</p> <p>8. “상시고용인원”이란 「<u>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u>」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u>근로기준법</u>」 제2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하고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u>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u>」 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p> <p>가. 「<u>소득세법 시행령</u>」 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p>	<p>제2조(정의) ----- -----.</p> <p>1. ~ 7. (현행과 같음)</p> <p>8. “상시고용인원”이란 정부가 고시하는 「<u>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u>」(이하 “<u>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u>”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인원을 말한다.</p>

나. 「국민연금법」 제3조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
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
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
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
람의 최근 1년간 평균 인
원

9. ~ 24. (생략)

제12조(국고지원이 수반되는 수도
권 이전기업 등 지원 특례) ①
시장은 「국가균형발전 특별
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자치단
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관내에 투자하
는 경우 이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

9. ~ 24. (현행과 같음)

제12조(국고지원이 수반되는 수도
권 이전기업 등 지원 특례) ①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 보조금의 지원 ·
정산 · 사후관리 · 환수 등에 관
하여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규칙에 따라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지원기업 사후관리) ① (생략)

② 시장은 투자계획의 이행 여부 또는 제1항의 보고사항을 시 소속 공무원에게 점검·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원받은 기업이 사업시행 후 5년 이내 업종을 전환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제34조(지원기업 사후관리)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④ -----
----- 제3항 -----

-----.

③ ----- 사업이행기간 내에 -----

-----.

① 투자기업은 보조금 교부결정 일로부터 5년간(이하 “사업이행기간”이라 한다.) 해당사업장에서 투자한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남원시 조례·규칙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친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1년 1월 29일

남원시 규칙 제 665 호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1항 중 “분양계약일”을 “공장등록일 또는 건축 준공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차액의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는”을 “지원 기준은”으로 한다.

제1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조례 제29조제4항에 따른 보조금 환수에 필요한 담보의 확보는 저당권 설정, 가등기, 보증보험증권 징구 등의 방식으로 한다.

⑥ 지원기업이 제5항에 따른 담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중 “투자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5년간 또는 공장가동일부터 3년간”을 “보조금 교부결정일부터 5년간”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남원일반산업단지 분양가 지원 기준 (제10조3제2항 관련)

대상요건 (분양면적 기준)	보조금 지급율	비고
6,600m ² ~ 33,000m ² 미만	정상분양가의 20%	
33,000m ² ~ 66,000m ² 미만	정상분양가의 30%	
66,000m ² ~ 99,000m ² 미만	정상분양가의 40%	
99,000m ² 이상	정상분양가의 5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의3(산업단지 분양가 지원)</p> <p>① 조례 제19조의3에 따른 산업단지분양가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u>분양계약일</u>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분양가 <u>차액의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u>는 별표 1과 같다.</p> <p>제15조(보조금 지원 등의 결정)</p> <p>① ~ ④ (생략)</p> <p>⑤ <u>시장은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경우 조례 제29조제4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투자이행에 대한 채권담보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보조금 신청시 제출하기로 한 채권담보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채권담보서류를 변경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u></p> <p><신 설></p>	<p>제10조의3(산업단지 분양가 지원)</p> <p>① ----- ----- - <u>공장등록일 또는 건축 준공일</u> ----- ----- --.</p> <p>② ----- -- <u>지원 기준은</u> ----- -----.</p> <p>제15조(보조금 지원 등의 결정)</p> <p>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u>조례 제29조제4항에 따른 보조금 환수에 필요한 담보의 확보는 저당권 설정, 가등기, 보증보험증권 징구 등의 방식으로 한다.</u></p> <p>⑥ <u>지원기업이 제5항에 따른 담</u></p>

제17조(보조금 정산) ① 조례 제3

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를 보조금 지원을 받은날
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정산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
례」를 준용한다.

제18조(지원기업 사후관리) ① 조

례 제34조에 따라 유치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투자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5년간 또는 공장
가동일부터 3년간 카드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장
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삭 제>

제18조(지원기업 사후관리) ① --

----- 보조금 교부
결정일부터 5년간 -----

-----.

② · ③ (현행과 같음)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남원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사업인 『전북학생수련원 모험장 부대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남원시 도시과(☎063-620-645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남 원 시 장

2021년 1월 29일

1. 사업의 종류 : 남원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사업
2. 사업의 명칭 및 시행지의 위치, 사업의 규모
 - 가. 명 칭 : 전북학생수련원 모험장 부대시설 조성사업
 - 나. 사업의 위치 및 규모
 - 사업의 위치 :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산45번지 일원
 - 사업의 규모 : 6,538㎡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전라북도교육감
 - 나.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4.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인가일로부터 ~ 2021. 12. 31.
5.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계획평면도 및 공사설계도서 : 실음생략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붙임참조)

<편입 토지 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읍	리	지번				성명	주소	권리명	권리의 종류	
1	운봉	공안	130-2	대	38,664	531	전라북도(교육감)				
2	운봉	공안	산45	임	359,308	6,007	전라북도(교육감)				
합계						6,538					

남원시 공고 제2021 - 243호

남원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공고문

「남원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9일

남 원 시 장

1. 제정이유

공공시설에 건립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공공조형물의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아름다운 도시공간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함 (안 제1조~안 제3조)
- 나. 건립승인신청, 비용부담, 건립기준 등을 규정함 (안 제4조~안 제6조)
- 다.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 등을 규정함 (안 제7조~제13조)
- 라. 건립승인 신청의 처리, 이의신청을 규정함 (안 제14조~제15조)
- 바. 공공조형물 관리, 활용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제17조)

3. 입법예고기간 : 2021. 1. 29. ~ 2021. 2. 18. (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문화예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1) 우편번호 : 55738
- (2) 주 소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문화예술과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063-620-6188), 남원시 홈페이지(<http://www.namwon.go.kr/>), 직접 방문 등

5.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문화예술과(☎063-620-61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남원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붙임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의견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남원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1. 1.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예술과장

1. 제정이유

공공시설에 건립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공공조형물의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아름다운 도시 공간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함 (안 제1조~안 제3조)
- 나. 건립승인신청, 비용부담, 건립기준 등을 규정함 (안 제4조~안 제6조)
- 다.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 등을 규정함 (안 제7조~제13조)
- 라. 건립승인 신청의 처리, 이의신청을 규정함 (안 제14조~제15조)
- 바. 공공조형물 관리, 활용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제1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1. 29. ~ 2021. 2. 18. (20일간)
 - 결 과 :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자체개선사항 동의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 공공시설에 건립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공공조형물의 난립 방지와 아름다운 도시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로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건립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단순히 예술창작활동에 따른 전시 등을 목적으로 임시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공공조형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시설물
나. 벽화·분수대·폭포 등 환경시설물
다. 동상·상징탑·기념비·상징물 등 상징조형물
3.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의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공공조형물 현황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건립할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직접 또는 건립주체로부터 공공조형물의 건립신청을 받아, 사전검토 후 총괄부서에 심의를 요청하며 해당 공공조형물의 건립, 보수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건립주체”라 함은 공공조형물의 건립 등을 신청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과 또는 부서를 말한다.

6. “보수 등”이란 공공조형물 등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원형보존,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와 미관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반 조치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건립승인신청) ①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할 경우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공조형물 건립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시에 기부 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공공조형물 건립 승인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공공조형물 건립(이전·교체·해체) 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3.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계획서 : 별지 제3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건립승인신청은 공공조형물 제작 전 디자인 기본설계 완료 후에 한다.

제5조(비용부담) 공공조형물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건립기준) ①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가치 구현과 설치되는 공공시설 등 도시경관과의 조화
2. 작품성, 독창성 및 조형성의 구현
3. 지역의 정체성과의 부합
4. 장소의 적합성, 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5. 규격 및 건립부지면적의 적정성

6. 내구성 및 구조의 안전성 확보

② 상징조형물 중 동상으로 건립할 수 있는 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 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 공감도

4. 출생지·묘소·활동지역·지명 등과 건립대상 인물과의 긴밀성

제7조(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공공조형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이전

2.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

3. 제15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을 반수 이상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총괄부서 담당 국장

2. 문화예술과장

3. 건축과장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쪽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남원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2. 문화·예술 및 공공조형물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공조형물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9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 of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수시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주민대표를 포함한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출석하는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의무와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의 안건이 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심의 안건이 위원으로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항

③ 위 각 호의 사항 이외의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은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의하여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13조(심의의 생략) 공공조형물의 건립승인신청을 접수한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총괄부서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디자인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는 경우

2. 해당 공공조형물의 설치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한 심의 또는 회의를 거친 경우

3. 기존 공공조형물이 설치된 동일 시설 내에서 안전 등의 이유로 단순 재배치하는 경우

4. 공공조형물의 일부가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보수를 하는 경우

제14조(건립 승인 신청의 처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건립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별지 1호서식의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 의뢰함. 이 경우 공공조형물 건립 선정 심사의 공정성과 내실화를 위하여 아이디어심사와 실행심사를 분리하여 할 수 있음

2. 공공조형물 관리 등의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

3.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건립인·허가 여부를 문서로 건립주체에게 통보

4.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준공한 후 주관부서에 준공 신청

5. 주관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 건립의 적정여부 확인 후 준공 처리

② 제1항제1호의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건립대상의 현황 분석(동상의 경우), 건립위치의 적정성, 건립에 따른 파급효과 및 주민 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5조(이의신청) ① 제14조에 따른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다.

② 시장(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6조(관리 등) ① 시장(주관부서의 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작성 및 비치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의 청결 유지
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에서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연 2회 상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조형물의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건립된 공공조형물을 이전하거나 철거 등을 해야 할 경우에는 건립주체에게 이를 통보하고, 제7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⑤ 건립주체의 해체 등으로 해당 공공조형물에 대한 보수 등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공공조형물을 직접 보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공공조형물의 활용) ①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립 또는 건립 결정된 공공조형물에 대하여는 제7조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건립[이전 · 교체 · 해체] 계획서

1. 사 업 명

2. 추진기간

3. 사업개요

가. 규 모 :

나. 모형 또는 형태 :

다. 재 질 :

4. 작품설명

5. 제 작 자

6. 사 업 비

7. 사업비 조달계획

8. 사 유

[별지 제3호서식]

관리번호 :

남원시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명 칭		건설일자	
위 치 (공공시설명)		형 상	
구조/재질		인물의 경우 조형 대상자	
규 격		금 액	
건설신청자		건설주체	
제작자		관리기관	
건설취지			
인물 또는 사실 소개			
조형물의 위치(배치)도		조형물의 전면사진	

공공조형물 점검 내역

점검일시		점검자	부서명	
			직급	
			이름	
			연락처	
점검내용				
점검상태	■ 양호 <input style="width: 50px; height: 20px;" type="text"/> ■ 불량 <input style="width: 50px; height: 20px;" type="text"/>			
조치계획 (불량일 경우)				
점검사진				
앞		뒤		
우측면		좌측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국토계획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역도시계획"이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2. "도시·군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3. "도시·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4.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 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5.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 5의2.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이란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입지규제최소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 라.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 마.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 바. 장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 사.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7.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8. "광역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시설
 - 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9. "공동구"란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0.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란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11. "도시·군계획사업"이란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

- 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12. "도시·군계획사업시행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13.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14. "국가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이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15.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건축법」 제55조의 건폐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용적률(「건축법」 제56조의 용적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6.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7.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8. "개발밀도관리구역"이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제66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19.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제67조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20. "기반시설설치비용"이란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신·증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69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공공시설)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항만·공항·광장·녹지·공공공지·공동구·하천·유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하수도·구거
- 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저수지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공공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중 운동장
- 장사시설 중 화장장·공동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 또는 장례식장에 화장장·공동묘지·봉안시설 중 한 가지 이상의 시설을 같이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을 적용하여 지능화된 시설
- 나.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3호의 초고속정보통신망, 같은 조 제14호의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
- 다.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스마트도시의 관리·운영에 관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라.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 가공 또는 제공을 위한 건설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 적용 장치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약칭: 공유재산법)

제7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부(寄附)를 받아들일 때에는 기부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기부서와 권리 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재산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나 임야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7.>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물건의 가격

5. 기부할 물건의 도면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표자가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각 기부자의 성명·주소 및 기부 재산 등을 적은 명세서를 제1항의 기부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 ③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대차(轉貸借)사업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9.>
1. 전대(轉貸)하려는 재산의 표시
 2. 전대하려는 재산의 사용목적, 수익방법 및 사용·수익기간
 3. 해당 재산을 전대받아 사용·수익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소
- ④ 법 제7조제2항 본문에서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상 사용·수익허가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2. 재산 가액(價額) 대비 유지·보수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3. 무상 사용·수익허가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4. 그 밖에 지방재정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⑤ 기부를 조건으로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를 하기 전에 기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각서를 받아야 한다.